

소상공인 창업 클라우드펀딩 지원사업 재공고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서는 인천소재 초기 창업자의 창업 아이템 시장검증 및 펀딩 성공으로 판로개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이 '소상공인 창업 클라우드펀딩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4월 30일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소상공인 창업 클라우드펀딩 지원사업

클라우드펀딩(Crowd-funding)이란?

- 혁신적인 아이디어 및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 펀딩 플랫폼을 통해 대중에게 회사 상품을 소개하고 자금을 모으는 활동

○ 사업목적 : 초기 창업자 아이템 시장검증, 판로 확대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창업 초기 운영 비용 절감

○ 사업기간 : '25. 6. 30.(월) ~ '25. 10. 31.(금)

○ 지원규모 : 11개 업체

○ 지원대상 : 인천소재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2페이지 '신청자격' 필수 확인

○ 지원분야 : 국내 리워드형 클라우드펀딩

※ 업체별로 희망하는 국내 펀딩플랫폼 자율 선택

○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500만원(*공급가액 기준, 부가세 제외, 원단위 절사)

- 지원금액은 제출한 견적서의 **공급가액 기준 90%**이며, 최대한도액 (500만원 이내) 내에서 지원함.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부가 가치세는 소상공인 부담임. **※자기부담금 : 공급가액의 10% 이상+VAT**

(예시) 공급가액 90%가 4,535,333원일 경우에 원 단위 절사한 4,535,330원 지급

○ 지원내용

구분	지원금액	세부지원 내용
홍보 동영상 제작비	최대 500만원 이내	클라우드펀딩 플랫폼 등록용 제품 또는 창업기업 홍보용 동영상 제작비
펀딩 상세페이지 제작비		클라우드펀딩 플랫폼 등록용 상세페이지 기획, 디자인, 제품 사진 촬영 등 상세페이지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펀딩 광고·마케팅비		클라우드펀딩 플랫폼 등록용 제품 및 기업에 대한 온·오프라인 광고비 (*펀딩 플랫폼 내 광고서비스, 키워드 광고, 배너광고, SNS 채널 광고 등)

- 국내 플랫폼을 통해 진행 시에만 지원(*오픈트레이드, 와디즈, 텀블벅, 크라우드, 오마이컴퍼니 등)
- 단, 펀딩스토리를 제작할 필요가 없는 플랫폼은 제외(ex. 카카오메이커스 등)
-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세부항목 중복신청 가능(ex. 홍보 동영상 제작 +펀딩 광고·마케팅비, 펀딩 상세페이지 제작+펀딩 광고·마케팅비 등)
- 클라우드펀딩 플랫폼 등록을 목적으로 제작하지 않은 제품 사진, 동영상, 디자인 제작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클라우드펀딩 소요비용 내 콘텐츠 제작은 자체제작이 아닌 대행업체(외주)제작만 지원하며, 자체제작 및 프리랜서 등 증빙이 어려운 경우는 지원 불가

2 신청 및 접수

○ 신청자격 (※아래의 자격요건 모두 충족)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등록되어 있고,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사업장 소재지 및 업력은 사업자등록증 기준임)

- ▶ 신청가능 업력 : 2018년 5월 3일 ~ 2025년 4월 30일(※사업자등록증 개업년월일 기준)
-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매출액, 종사자수 둘 다 충족해야 함.
[별표1. 소상공인 기준(상시근로자 수,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
-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별표2. 소상공인 지원정책 제외 대상 업종]
- ▶ 온라인 판매 가능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5년 9월 내 펀딩 런칭 가능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보유한 업체

- ※ 본 센터 2024년 소상공인 창업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수혜업체 및 2024년 수혜업체 대표자 본인 명의의 타 사업장은 신청 불가
- ※ 본 센터 2025년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1차) 및 강소 소공인 육성 지원 사업 선정업체 신청 불가

□ 지원제외 업종 및 대상

- 소상공인 지원정책 제외 대상 업종[별표 2]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업체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부도, 휴·폐업 중인 업체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 타인의 창작물을 도용 및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경우
-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기타 관련 규정, 중복성,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제외
- 기타 인천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체

※ 위의 경우 지원이 제한되며, 선정 이후라도 선정 취소 또는 지원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

○ 접수기간 : '25. 4. 30.(수) ~ 5. 23.(금) 18:00 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youngsun42@insupport.or.kr

※ 이메일 제목은 「2025 소상공인 창업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신청서-업체명」

○ 제출서류

- 사업공고에 첨부되어있는 신청 서식 작성 및 제출서류 발급하여 함께 제출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25.4.30일 이후)

No	제출서류	비고
1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제1호]	- 신청서 등 관련 서식자료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제출
2	지원사업 사업계획서[서식 제2호]	
3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안내문[서식 제3호]	
4	지원사업 참가서약서 [서식 제4호]	
5	(제작업체) 견적서 1부[서식 제5호]	- <u>견적업체 직인 날인 필수</u> - 제작업체 자체 견적서 활용 가능
6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7	지방세 납세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 공고일(4.30) 이후 발급분 제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8	매출액 확인서류(①, ② 둘 중 한 가지 서류 필수 제출) ①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4) ②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2024)	
9	상시근로자 확인서류(①, ② 둘 중 한 가지 서류 필수 제출) ① (대표자 포함) 종업원이 있는 경우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② 종업원이 없는 경우 : (대표자)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10	기타실적 및 증빙 서류	
		-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미제출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생애주기지원팀 조영선 과장(☎032-715-4047)

3 선정방법 및 평가 기준

○ 평가방법

- (1차) 신청자격 요건 및 구비서류 제출 여부 등 사업담당자 사전심사
- (2차) 내·외부 평가위원 5인 내외로 ‘선정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 사업계획 적합성, 경쟁력, 수행능력 등 내부 선정기준에 의한 서류 평가
 -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 평균점수 70점 이상 고득점자순으로 선정 (미선정 업체 중 평균점수 7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예비업체 선정)
- ※ 선정 후 결격 사유 등 여러 사유에 의한 탈락(포기)업체 발생 시 예비업체 추가 선정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업체 선정 및 지원금액 확정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 일정

- 평가대상 : 사업 신청업체(※서류접수 마감일까지 신청한 업체에 한함.)
- 평가일시 : '25. 6월 중순 예정(※내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최종 선정발표 : '25. 6월 말 예정(*선정업체 개별통보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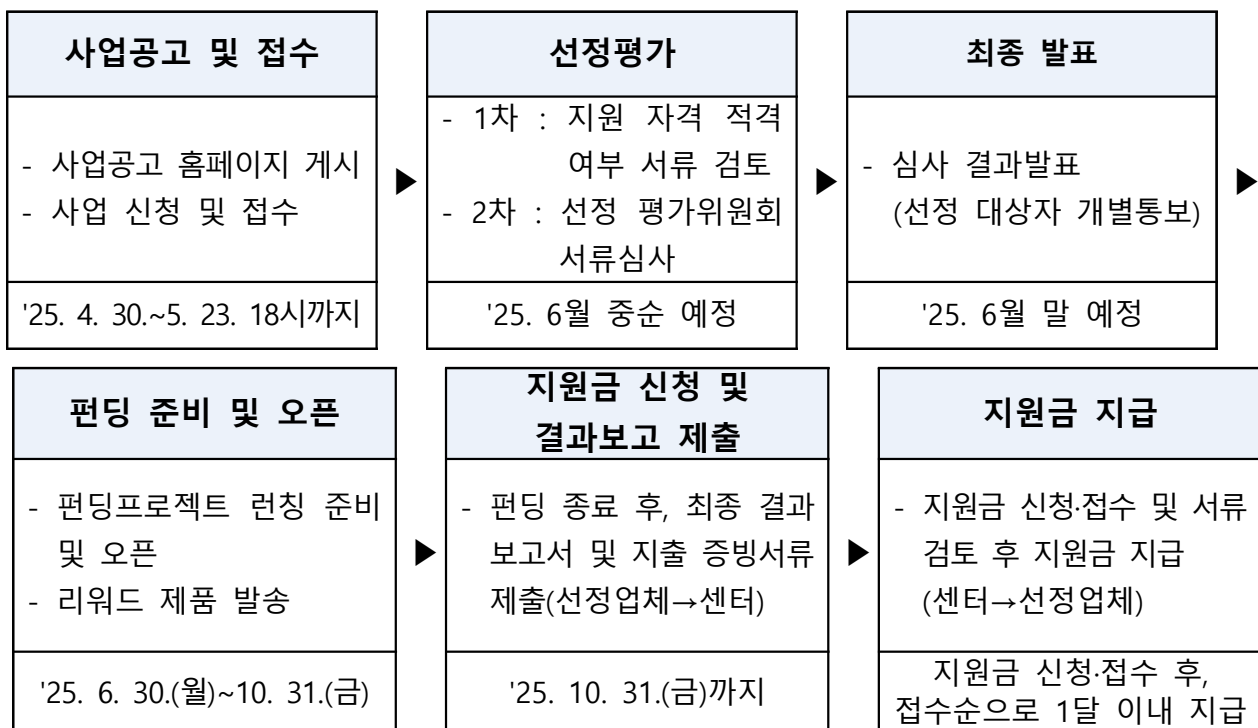
※ 선정업체에 사업계획서 보완 및 제품 관련 상세자료 추가요청 할 수 있음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배 점
적합성	- 사업계획이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10점
경쟁력	- 제품·서비스에 차별화된 기능/특징이 있는가?	25점
	- 제품·서비스의 완성도가 높으며 품질이 우수한가?	25점
수행능력	- 제품·서비스를 생산·공급·유통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15점
	- 펀딩을 기획하고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15점
기대성과	- 사업 참여를 통해 신규 고객층 확보 및 매출 증대 가능성이 있는가?	10점
합 계		100점

※ 평가방법 및 기준은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4 추진일정



※ 추진 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또는 개별공지 예정

○ 사업 완료 기준 : 사업계획서에 제출한 제품이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등록

○ 사업수행 조건 : **펀딩 상세페이지에 센터명과 사업명 명시(※필수)**

(예시)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의 '2025년 소상공인 창업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입니다.

○ 지원금 지급

- (비용지출) 선정된 업체가 전체 소요비용을 선지출 후에 개별 정산
- (지급시기) 선정된 업체가 펀딩 완료 후에 결과보고서 및 지출 증빙 서류 제출하면 서류 검토 후 결과보고서 접수순으로 지원금 지급
- (지 급 처) 대표자 또는 업체 통장으로 직접지급
- (지급조건) **2025년 10월 31일까지 크라우드펀딩 완료** 후 지원금 접수 완료 건에 한해서만 지급함. 단, 기한 내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사전에 담당자와 일정 조율 후에 제출
- (기타사항) 대표자 명의의 통장에서 계좌이체 처리 필수이며, 지출 증빙은 전자세금계산서만 인정함. 단, 펀딩플랫폼 광고비 등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카드 매출 전표 인정

○ 지원내용 변경 및 포기

- 제작내용, 제작업체, 제작비용, 펀딩 일정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사업변경승인요청서(별도 서식) 작성하여 센터로 제출
- 사업변경승인요청서 제출 후, 변경 승인 후에 제작을 시행해야 함.
- (제작비용 증가 시) 선정 시 결정된 지원금은 상향되지 않음
(제작비용 감소 시) 지원금은 변경된 견적서의 공급가액 90%로 조정되어 지급됨
- 사업 포기 시, 사업 포기 신청서(별도 서식)를 제출해야 함

- 사업 신청은 업체의 대표자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담당자가 신청 가능
- 접수 마감 시간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평가에서 제외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업체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수정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제출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센터의 선정방식 및 선정결과에 이의가 없음을 사전 확약하여야 함
- 사업 접수현황, 신청자별 점수 등 평가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중복지원 및 참여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 신청업체는 대행업체를 선정 후 본 사업을 신청해야 함(대행업체 건적 제출 必)
 - ※ 대행업체 선정 시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과 무관한 업체를 선정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종 선정되었더라도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기타 제반 사항의 위반내용이 발견될 경우 사업 중단 및 지원비 환수
-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센터 지침 및 안내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 중도 포기 시 제작하던 모든 콘텐츠, 홍보·마케팅 지원 불가
- 사업공고 및 추진 일정 등은 내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별표 1

소상공인 기준(상시 근로자수,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

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	근로자 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②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5. 부동산업	L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 산업분류의 대분류(제조업은 중분류) 기준에 따른다.
-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별표 2
소상공인 지원정책 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유탄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표준산업분류	업 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 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 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